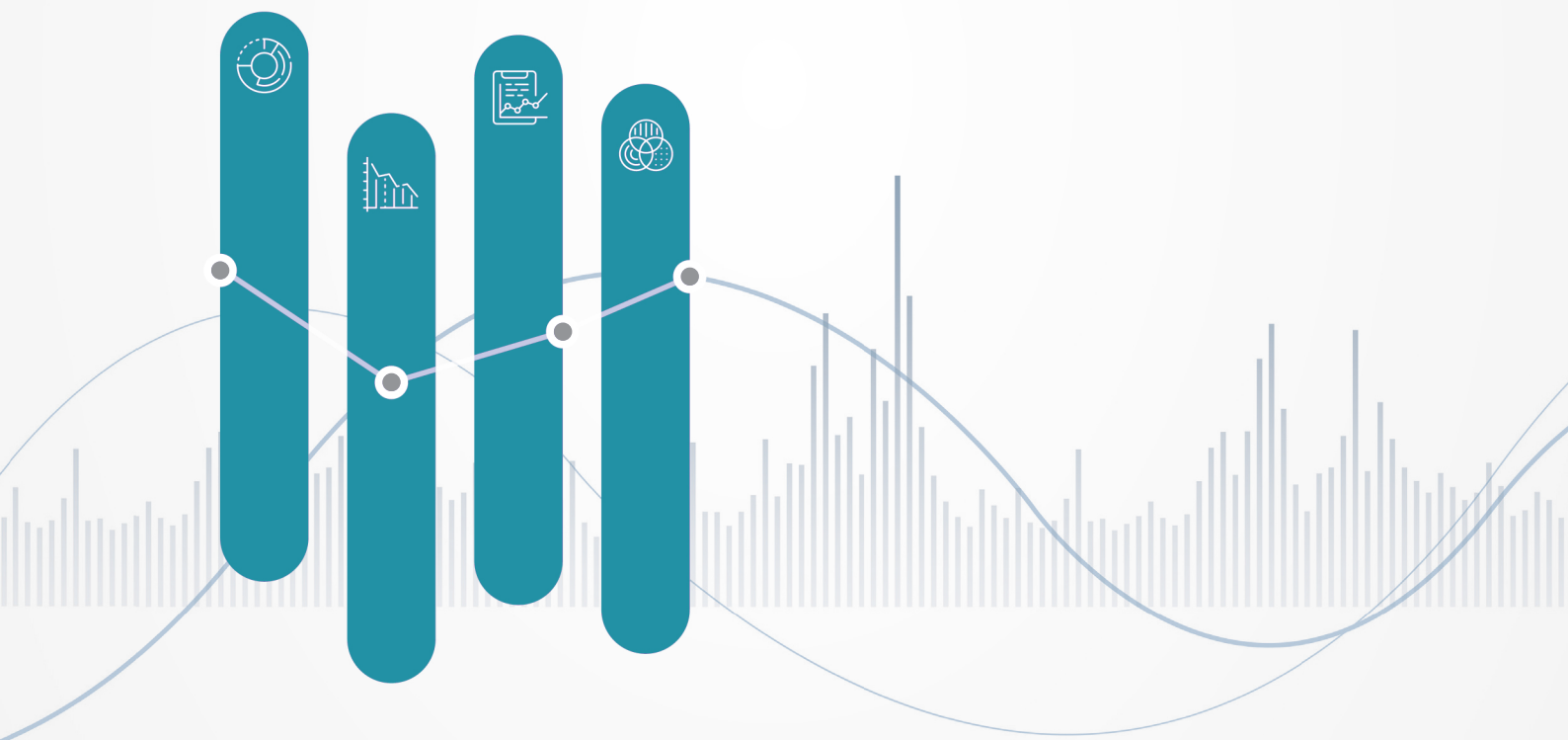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2024.7.



●●● 목 차 ●●●

제1장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와 분류 1

- 1-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3
-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분류 8

제2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 2-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 15
- 2-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15
-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17
- 2-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4
- 2-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32
- 2-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35
- 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및 부여 계약서 작성 39
-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철회 42

제3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43

- 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의 45
- 3-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45
- 3-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49

제4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51

- 4-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개관 53
- 4-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손금산입 55
- 4-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56
- 4-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59
- 4-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63

Q & A 73

부록 83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 8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91

3. 법인세법 관련 규정 99

4. 소득세법 관련 규정 100

5.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101

6. 상법 관련 규정 10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예시) 및 해설 113

제1장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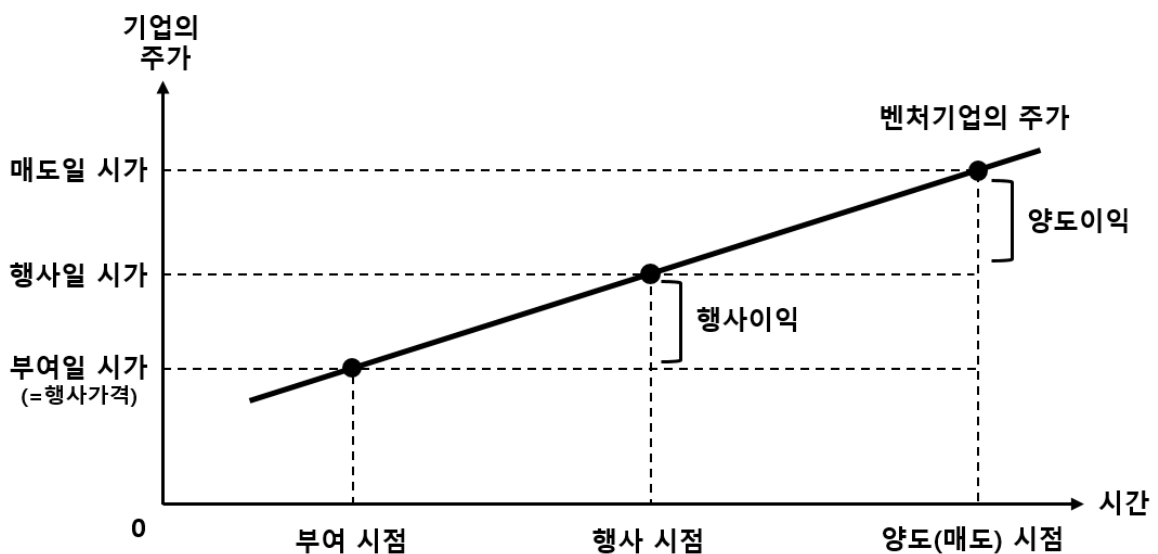
1-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의 및 개념

- **(정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특징)** 회사의 성장을 주식 소유의 형태로 임직원 등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식에 근거한 보상(stock-based compensation)의 특징을 가지며, 주식을 소유한 임직원 등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과에 연동하여 부여하는 보상(performance-based compensation)의 특징 또한 가짐
- **(작동원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시점(부여 시점)의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시가 차익(행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후 회사 가치가 더욱 상승하면 주식 가치 상승분만큼 매도 차익(양도이익)을 얻게 됨

참고 1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참고 2

■ 부여시점, 행사시점, 양도시점이란?

- ▶ **부여시점** : 계약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시점으로 행사가격이 결정되는 시점
 - ▶ **행사시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으로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시점
 - ▶ **양도시점**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추후 시장에 매각하는 시점으로 양도이익을 얻게되는 시점
- * 행사시점과 양도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
- * 부여시점, 행사시점, 양도시점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및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효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보상의 경우 그 부여 시점에서 장래에 신주를 발행하는 등 권리만을 주는 것이므로, 보상을 위해 당장 자금조달을 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음
- **(임직원 등)**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 및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됨.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행사를 포기하거나, 이후 주가가 상승한 뒤 행사하면 됨

참고 3

- 주식매수선택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 행사할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부여받는 시점에서 이미 양(+)의 가치를 지님
- ▶ **(스톡옵션 행사 예시) 행사가격이 10,000원인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가정**
 - ① 주식의 시가가 30,000원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10,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으므로 **20,000원의 행사이익이 발생**
 - ② 주식의 시가가 5,000원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시가가 행사가격인 10,000원 이상으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면 됨

주식매수선택권과 임직원 등의 보수 또는 임금과의 비교

-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의 기여(노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행사 시 신주가 발행되는 등 자본거래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잠재적 주식'(potential stock)**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판례 1

- 주주총회의 결의 중 임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결의 내용은 임원에 대한 보수 문제의 일부라 할 수 있음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판결)
- 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 벤처기업의 임원(이사·감사)과 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상법 제388조와 제415조에 정한 보수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과 다른 점**은 아래와 같음
 - 주식시장의 침체 등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늘 상회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음
 - 임직원 등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제한되므로 **제3자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지 않음**
 - 임직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행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
 - 주가(株價)가 회사의 성과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임무 수행과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

■ 주식매수선택권 도입의 장점과 단점

[기업의 입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장점

- 임직원 등과 주주의 이해(利害)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으로서 기능함
- 임직원 등에게 주인의식을 함양하여 기업경영에 관심을 고취하고, 사실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기업의 실적에 연동되어 근로의욕이 높아짐
-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직원 등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는 추가적인 금전 부담 없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정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회사와 주주, 경영진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잠재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하게 되어 적대적 기업매수(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안정적 회사경영에 기여

○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

- 주가 상승과 임직원 등의 노력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게 될 위험이 있음
- 또한,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가조작을 할 위험성도 있음
-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목표로 재임(재직)기간 중에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에 몰입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을 떨어뜨릴 수 있음
- 반대로,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등은

그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몰두하여** 적극적인 회사경영이 아닌 위험회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

[임직원 등의 입장]

○ 주식매수선택권의 장점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은 주가가 부여계약에서 약정된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하면 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어서 **주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일부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등 **절세와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여할 주식의 수량을 결정할 때 **공정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 임직원 등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음
- 임직원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회사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주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됨
- **행사 시작 시점이 너무 미래이거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경우**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오히려 임직원 등의 노력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서 의미가 퇴색함**
-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할 여지가 있으며,** 부여받은 후에 주가가 행사가격을 상회하지 않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한 이후에는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폐단이 발생함**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분류

■ 행사요건의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요건이 부여 시점에 확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①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②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목적과 현실, 임직원 등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중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①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fixed stock option)**은 부여 시점에 행사 가능 수량과 행사가격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확정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현재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 ②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variable stock option)**은 부여 시점에 그 결정 방식 또는 결정 산식만 고정되어 있을 뿐 **행사 가능 수량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구체적인 행사 가능 수량은 특정 시점의 주가 수준 혹은 내부적 성과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
 -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직원 등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가질 수 있음

■ 참고 4

■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의 예시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에 회사의 영업연도말 순이익이 전년도 순이익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20%를 행사할 수 있고, 20% 이상 증가한 경우 60%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가 상장을 위한 심사에 통과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 다만, 성과에 연동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영업연도별 순이익처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만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근거 법률에 따른 분류

[상법에 따른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대상 및 종류 (제340조의2 제1항)
 -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행사가액과 실질가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요건 (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340조의4)
 -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 i)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ii)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iii)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함
 - i)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 ii)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함
 - i)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v)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함
 - 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ii)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 i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금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v)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은 위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음

[상법에 따른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 (제542조의3)**
 - 상장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5%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또는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우리나라는 '98년 12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신설하였다가 '99년 상법이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벤처기업법도 용어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변경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요건 등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6조의3 ~ 제16조의6)
 - 벤처기업법은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됨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다른 기업군에 비해 부여대상, 부여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유리하게 운용
 - i) 부여대상 :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벤처 경력자, 석박사, 전문직종 등)
 - ii) 부여한도 : 해당 벤처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
 - iii) 행사가격 : 일정 요건(신주발행, 권면액 이상의 행사가격 등)을 충족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 가능
-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취소·철회하는 경우,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법과 벤처기업법 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비교]

구 분	일반 주식회사	상장회사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벤처기업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340조의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54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법 제16조의3~6
부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파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파용자) 관계회사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특례 외부전문가 특례
부여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특례 (단, 외부전문가에 대해선 10% 이내)
행사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주발행) 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실질가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임직원에 한하여 시가 미만 & 권면액 이상 가능) 특례 (자기주식) 시가 이상
임직원 세제 혜택 (조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특례(16조의2)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과세 특례 적용 납부특례(16조의3) 상장 벤처기업도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특례(16조의2) 특례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단, 비과세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 최대 5억원 납부특례(16조의3) 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과세특례(16조의4) 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 3년간 행사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제2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

부여주체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주체는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함**
(벤처기업법 제15조 제1항, 제16조의3 제1항)
 -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위는 계속 유효
(벤처기업법 제24조 제1항 제5호)
- 주주총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제출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련된 사항을 설계하는 당사자는 **이사회**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2-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부여대상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은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은 주가 수준을 통해 직무수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주가로 성과측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임직원 또는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여야 함**
- 벤처기업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으로 지급할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은 다음의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음
 - 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ii)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iii)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법령 1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
 6.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
 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8.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9.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 iv)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법령 2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v)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법령 3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부여제외대상

- 대주주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제외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주요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소유자 또는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법인의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2-3. 정관상 근거 규정과 등기

의의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등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근거를 정관에 마련한다는 것과 아울러 정관을 등기함으로써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시(公示)하는 효과가 있음

(상업등기법 제69조)

- 벤처기업법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4 제1항)

■ 정관상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관에 아래의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 i)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i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v)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벤처기업법 제16조의4제1항)

-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한 정관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① 이사회 개최 및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정(상법 제362조, 제390조, 제391조)
 - 이사회일을 정하고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을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 가능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며, 통상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
 -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 아래 정관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에서 강제하는 필수규정(1항, 2항, 3항, 4항, 5항, 10항, 11항)을 정하였다면, 필수규정 내의 밑줄 부분과 자율규정 항목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활용

정 관

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필수규정**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000주식**(예시.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필수규정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필수규정**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필수규정**

1. 회사의 임직원

2.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필수규정**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자율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시점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자율규정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자율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text{(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⑨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의 20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

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율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외부 전문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반대급부로 체결한 용역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필수규정**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필수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정관에 부여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①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권리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 **주식 가치를 희석**

참고 5

■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의 장단점

- ▶ **(장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현금 지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주발행 대금 납입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이 증가함
- ▶ **(단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추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과 주식 가치 중 일부가 행사자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

② **(자기주식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매수하여야** 하므로 **주주에 돌아갈 이익배당이 감소**

* 자기주식 :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그 명의로 자본으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거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해당 주식을 뜻함

-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상법 제341조 제1항, 제462조)

*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준비된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

참고 6

■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 양도 시 장단점

- ▶ **(장점)** 회사 주식 수에 변동이 없어 기존 주주의 의결권과 주식 가치가 유지됨
- ▶ **(단점)** 임직원 등이 언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회사는 행사 기간 중 미리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행사 기간 중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이중 부담을 지게 됨

③ **(시가차액 보상)** 시가차액(행사일 시가 - 행사가격)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주식 변동은 없지만 **보상되는 금액만큼 회사 재산이 유출됨**

■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 **(설립등기) 회사설립 시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그러한 정관으로써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상법 제299조, 제300조, 제314조)
 - 발기인이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의 경우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추분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14일)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고 그와 함께 발행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변경등기) 회사설립 후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중받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변경등기** 마쳐야 함
-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 i) 주주총회의 명칭
 - ii) 주주총회 개최일시와 개최 시각, 개최지와 장소
 - iii) 총주주의 수와 총주식의 수, 출석주주와 그 주식의 수
 - iv) 의장의 개회선언
 - v) 의사의 진행요령과 결과
 - * 보고사항 개요, 안건 상정, 제안이유, 토론 및 의견의 요지, 결의의 방법·내용·결과 등
 - vi) 폐회 선언 및 폐회 시각
 - vii)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추가적으로 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등에 관하여 정관에 자세하게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더 나아가 정관상의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하는 등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정관의 하위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기본사항

-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된 이해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정관에 근거를 마련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중요 내용을 정하는 부여결의를 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4 제2항)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 벤처기업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정관에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부여 대상자를 특정하여야 함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름
 - 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신주발행) 또는 기존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자기주식 양도)
 - 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한 날의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시가차액 보상)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는 부여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부여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

■ 참고 7

- 부여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예시
 - ▶ (부여시점)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부여 계약서에는 “신주발행, 자기주식 양도, 시가차액 보상의 방법 중 행사시점에 이사회가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
 - ▶ (행사시점) 기업의 상황에 따라 부여시점에 제시해 둔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관리자에게 주식(또는 현금)을 부여

- 단,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경우,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신주발행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부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함

법령 4

- 시가보다 낮은 가격 발행 요건
 -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⑤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text{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text{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신주를 인수할 때는 그 인수가격을 말하며, 자기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양수에 대한 대가, 그리고 시가차액을 보상받을 때는 차액 산정의 기준을 말함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 가능 (벤처기업법 제16조의5제1항)
- 주주총회에서 정한 행사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행사기한이 도래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음

참고 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과 정관의 규정 중 빠른 행사기한을 기준으로 결정

	정관 규정	부여 계약 (2022.1.1. 부여)		행사기한(期限)
임직원 甲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	2024.1.1.부터 2030.12.31.까지	⇒	2030년보다 7년 경과(2029년)가 먼저이므로 행사기한은 2028.12.31.
임직원 乙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 (~2026.12.31.)	⇒	i) 2025.1.1. 퇴직하였다면 행사기한은 2025.3.31. ii) 2026.12.1. 퇴직하였다면 행사기한은 2026.12.31.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일정기간으로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장일을 고려한 기간부여, 성과를 연동한 기간부여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

참고 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예시

- ▶ (사례1) 일정 기간으로 행사기간 부여(부여일 : 2023.05.01.)
 - 확정 일자 : 2025.05.01. ~ 2030.04.30.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간)
 - 불확정 일자 : 2025.05.01. ~ 퇴직일
 - 분할형 일자 : 부여일(2023.05.01.)에서 2년 경과(2025.05.01.) 시 40%, 3년 경과(2026.05.01.) 시 30%, 4년 경과(2027.05.01.) 시 남은 30%를 행사할 수 있으며, 5년 경과(2028.04.30.) 시 기간 종료
- ▶ (사례2) 특정 사건(상장일 등)을 기준으로 부여(부여일 : 2023.05.01.)
 - 코스닥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4.04.30.)까지
 - 2024.01.01.과 코스닥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4.04.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 경우 행사기간은 2023.05.01. ~ 2024.01.01.)
- ▶ (사례3) 성과와 연동한 기간 설정
 - 누적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행사
 - OO상품 10만개 누적 판매를 달성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행사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에 여분이 남아있어야 함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참고 10

■ 수권주식 여분이 없는 경우 정관변경 예시

- ▶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만 주이며,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1만 주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여분이 없으므로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 위와 같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할 주식의 수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시점뿐만 아니라 행사로 인하여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도 여분이 있어야 함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상법 제434조)**
 -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者)는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자가 주주인 경우, 개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판례 2

-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지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음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주주총회 결의를 허위로 조작하여 임직원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과 정관을 위배한 부여로 효력이 없음

판례 3

- 주주총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만들어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빙자하여 임직원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더라도 이는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 **주주총회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방법, 가액, 기간 등 본질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영규칙이나 계약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음**

판례 4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 주주총회 결의사항 일부의 이사회 위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다만, 벤처기업법은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4 제3항)
 - 벤처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음
 - 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의 성명이나 명칭
 - ii) 각 부여 대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이사회에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함
 -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는 회사에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총수의 20%**(발행주식총수의 20%가 아님에 주의) **이내**

■ 참고 11

■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

$$\text{위임 최대 수량} = \text{발행주식총수} \times \text{스톡옵션 부여 한도(최대 50\%)} \times 20\%$$

- ▶ (예시1) 발행주식총수 100만주인 회사가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를 50%로 설정
= 100만주 × 50% × 20% = 10만주 (**발행주식총수의 10%**)
- ▶ (예시2) 발행주식총수 100만주인 회사가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를 20%로 설정
= 100만주 × 20% × 20% = 4만주 (**발행주식총수의 4%**)

-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예시)]

이사회 의사록

(제○기 - 차)

1. 일 시 : 2020년 ○월 ○일 00:00
2. 장 소 : 주식회사 ○○ 본사 회의실
3. 출석현황 : 이사총수 ○명 중 ○명 출석
 감사총수 ○명 중 ○명 출석

의장 ○○○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서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바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승인·가결하다.

- 다 음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1) 소집일시 : 2020년 ○월 ○○일 오전 10:00
- 2) 소집장소 : 본사 회의실
- 3) 안건 : 이사 ○○○, 직원 ○○○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 승인의 건**

- 1) 부여대상 : 2020년 ○월 ○○일 현재 **변호사 1명과 공인회계사 1명** (명단 : 붙임)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준일 : 2020년 ○월 ○일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
 - 기명식 보통주 _____주 (1주당 액면금액 0,000원)
 (2020년 ○월 현재 발행주식총수 ○○○○○의 %)
- 4) 행사가격 : 금 ○○○○원
- 5) 부여방법 : 신주발행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 2020년 0월 0일부터 2020년 0월 0일

7) 기타 : 붙임 자료

가.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1부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1부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표(명단) 1부

이상과 같이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0시 00분)

금일 결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다.

2020년 0월 0일

주식회사 00

의장 대표이사 000 (인)

이 사 000 (인)

이 사 000 (인)

감 사 000 (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를 하였지만,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다투 수 있음
- 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②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결의무효확인의 소, 부존재확인의 소 모두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 참고 1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를 다투는 소의 유형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주주, 이사, 감사	소의 이익이 있는 자	
피고	벤처기업		
청구원인	결의절차의 하자 결의내용 정관위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	결의절차의 중대한 하자
제소기간	결의일로부터 2월	제한없음	

-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결과 주주총회가 취소되거나 무효 혹은 부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경우,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무효임

■ 판례 5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2-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행사가격 결정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아래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3항)
 -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②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권면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간주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함 (상법 제451조제2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사이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 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일 것
 - 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 i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평가 기준

- 벤처기업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됨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이에 더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이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도 시가로 인정
 - i)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ii)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시가 등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개별 기업의 시가평가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
- 위의 시가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판례 7

-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순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6마272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시가 평가 산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text{1주당 평가액} = \frac{\text{①(1주당 순손익가치 } \times 3) + \text{②(1주당 순자산가치 } \times 2)}{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함

- 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

$$\text{1주당 순손익가치} = \frac{\text{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text{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text{*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frac{A \times 3 + B \times 2 + C \times 1}{6}$$

- A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B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C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함

- ②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text{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액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제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

-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가액으로 함

2-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신고의무

- 벤처기업은 아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 i)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ii)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신고 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령 위반 및 분쟁 사항을 조기에 차단하며,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조세 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신고내용

- 벤처기업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①**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에 부여 당시의 ②**정관 사본**, ③**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
 - 주식매수선택권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위의 서류와 함께 ④**이사회 의사록**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
-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①**주식매수선택권 철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 i)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내에 부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 ii)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주식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 iii) 상장한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 iv)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정관의 개정

신고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 “보고·신고 → 스톡옵션 신고” 순서로 접속

참고 13

■ 누리집 화면 안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제도 안내 확인신청 **보고·신고** 공시·통계 기관소개 고객지원

보고·신고

- 복수의결권주식**
 - 복수의결권주식 보고
 - 복수의결권주식 변경
 - 복수의결권주식 허위발행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철회
- 성과조건부주식**
 - 성과조건부주식 신고
 - 성과조건부주식 해지·해제
 - 성과조건부주식 자기주식 취득신고

- 신고 접수 및 확인은 벤처기업 소재지의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처리하며, 소재지별 담당 중소벤처기업청은 아래와 같음

참고 14

■ 벤처기업 소재지별 담당 중소벤처기업청

벤처기업 소재지	담당 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인천광역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울산광역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광원특별자치도	광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충청북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충청남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경상남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 담당자 연락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의 신고 화면에서 확인 가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양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신고내용	결의 종류(택1)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이사회 결의	위임한 주식 수(이사회 결의만 작성) 주
	결의 일자 년 월 일	주주총회 승인일자(이사회 결의만 작성) 년 월 일
	부여 당시 시가(주식 가치) 1주당 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항

연번	성명 (명칭)	자격	부여 방법	부여 주식 수	행사가격	부여 주식의 종류	행사 기간
합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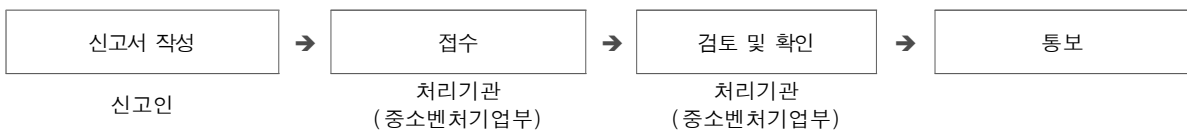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1부 3. 이사회 의사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철회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철회 사항

연번	성명 (명칭)	부여 일자 (주주총회 일자)	취소·철회한 주식 수	취소 사유
합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철회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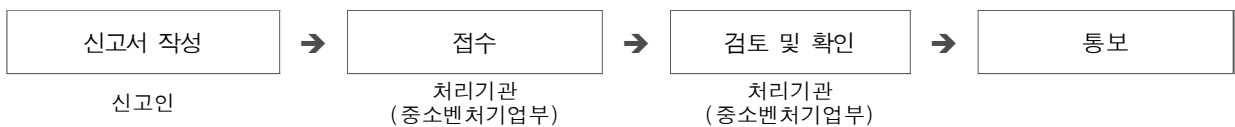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2-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및 부여 계약서 작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의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의

판례 8

- 일정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 벤처기업이 해당 회사의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필요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및 비치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상법 제340조의3 제3항)

- 작성된 계약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상법 제340조의3 제4항)

판례 9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짐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최소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
 - 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ii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 iv)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 v)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벤처기업의 이행 기한
 - v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시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유**는 자본거래 등으로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변동될 때, 기존 주주와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참고 15

■ 행사가격 조정 필요성

- ▶ (예시1) 회사가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총수를 기존의 200%로 늘리는 경우 산술적으로 1주의 가치는 1/2로 하락하므로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가격도 이에 맞춰 조정하여야 함
- ▶ (예시2) 회사가 액면병합을 통해 액면가를 2배로 높이고 발행주식총수를 기존의 50%로 줄이는 경우 산술적으로 1주의 가치는 2배로 상승하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가격도 이에 맞춰 조정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를 넘어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은 무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효력

-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및 장래의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부여 한도를 초과하여 부여되는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음**

■ 판례 10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행사로 인하여 주식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등기 대상이 아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에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 판례 11

-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5189 판결)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철회

부여 취소·철회사유

-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또는 철회(이하 “취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허용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6)
 - 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 i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iii)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iv)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례 12

- 주식매수선택권의 당사자는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2014316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회사와 부여 대상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벤처기업법 및 상법을 적용

부여 취소의 효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

**제3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의의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여부는 부여받은 자의 선택이며, 행사하는 시기는 부여받은 자가 행사 의사를 벤처기업에 정확하게 알린 시기를 말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교부받거나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수하거나 혹은 차액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함

판례 13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하게 알린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권리 보유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만큼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고 같은 수량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권리 발생

3-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행사자

-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보유한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5제2항)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최소 재임(재직)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계약을 통해 줄일 수 없음**
(벤처기업법 제16조의5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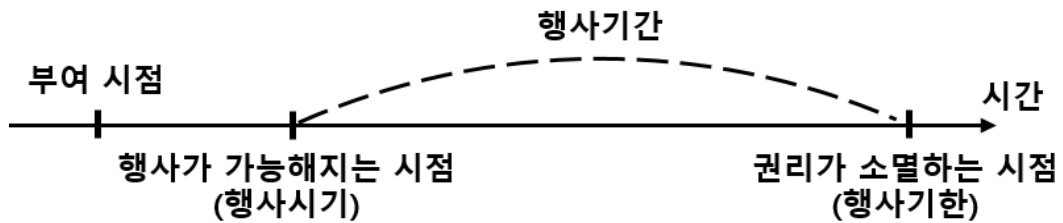
- 외부 전문가는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해당 규정도 임직원 최소 재임 요건과 같이 **강행규정임**
(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1조의4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최소 재임(재직)기간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기(始期)부터 권리가 소멸하는 기한(종기)까지를 의미

참고 1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너무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권리자의 행사 시점 선택이 제한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음
- 반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권리자의 행사 여부·시점에 대해 변수가 많아지며, 퇴사한 이후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이 남아있을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음
- 벤처기업법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음

판례 14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 벤처기업법은 행사기간 요건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회사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 벤처기업법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 등 본인의 책임 아닌 사유(정년 제외)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또한,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함
- 외부 전문가의 경우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행사신청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기한 내에 벤처기업에 행사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청구서 2통을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함
(상법 제516조의9 제1항)
-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등이 부여되는 형성권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이 신주발행인지 자기주식 양도인지에 따라 행사가격을 납입해야 하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 전액을 회사가 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여야 함 (상법 제516조의9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예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본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하고자 합니다.

부 여 일 자 :

부여주식의 종류 :

부 여 수 량 :

행 사 가 격 :

행 사 신 청 인 :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e - m a i l 주 소 :

년 월 일

주식회사 OO 귀하

첨부서류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사본) 1부.
2. 신분증(사본) 1부.

3-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벤처기업의 의무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지 않는 한 보유자가 행사요건을 갖추어 행사한 경우 그 행사에 응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에 따른 행사의 효과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을 하고 인수대금을 은행 등에 납입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교부하여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납입금을 입금한 날 주주가 됨 (상법 제516조의10)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총액이 증가**하므로 납입금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상법 제351조)
- **자기주식 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을 하고 납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양도하여야 함
 -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가 주주로 되는 시기는 주식양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임
- **시가차액 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을 하면 회사는 행사가격과 행사시점 시가와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차액을 현금, 자기주식 또는 현금과 자기주식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시가와 행사가격 사이의 차액만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식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주주 권리의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함
 -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주주가 된 자는 당해 기간 중의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4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효과를 다투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지만,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하에 따라 다투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함 (상법 제429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자기주식이 양도되었거나 시가차액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 내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로 다투어야 함 (상법 제380조)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에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하자 이외의 사유로 행사 효과를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
 - 이 경우에 제기되는 민사소송은 그 주장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음

제4장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4-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세제도 개관

■ 법인세법

- 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소득세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그 행사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유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정한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판례 15

-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5189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89 판결)

-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행사 시점에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세후 이익을 증가시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원
 - 세제 혜택이 일종의 유인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자 모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조특법은 이하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일부에 대한 비과세 특례** (조특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연간 2억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 특례의 총 한도는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임
 -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특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 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③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조특법 제16조의4)

4-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손금산입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은 자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벤처기업에서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손비(損費)**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함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i)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ii)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벤처기업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일종의 부가급여(fringe benefit)를 취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여하는 회사가 손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의 소득발생 시기와 부여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4-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성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서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소득의 성격은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됨
-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 포함)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0조)

판례 16

- 통상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함 (서울고등법원 2006.12.07. 선고 2004누17497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내용 및 근거

-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조특법 제16조의2)
-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 임원 등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 벤처기업 임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이하와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통한 우수인재 유입**을 위하여 임원 등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임원 등의 **재임 또는 재직기간 동안에 형성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를 소득의 귀속연도로 하여 일시에 과세함**에 따라 임원 등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을 받아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행사이익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 비과세 특례 적용 절차

-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2)
- 납부특례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적용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행사이익 누적 금액	
					연간 누적 금 액	총 누적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3. "행사이익 누적 금액"란의 "연간 누적 금액" 란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의 연간 행사이익 누적 금액을 적고, "총 누적 금액" 란은 해당 연도의 연간 행사이익 누적금액을 포함한 총 누적 금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분할납부 특례의 내용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소득세 비과세되는 금액 제외)을 5년간 **분할납부** 가능. 단,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조특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14조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음**
 - 납부특례를 적용받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이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할납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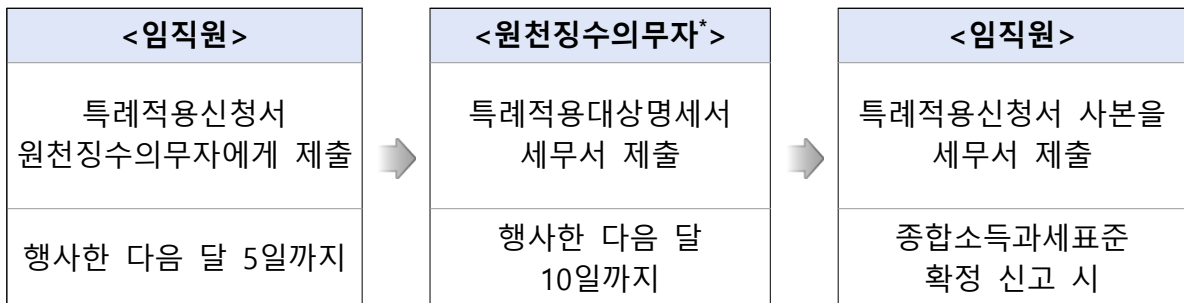
- 소득세를 분할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즉, **5년에 걸쳐**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의 **5분의 1씩** 매년 납부하게 됨

분할납부제도의 이용절차

-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벤처기업)에 제출 (조특법 제16조의3 제3항,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제3항·제4항)
 - 위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벤처기업)**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중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조특법 제16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참고 1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분할납부 신청 절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 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의무자 현황

신 청 인		원천징수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원천징수 제외	[] 분할납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 방법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하며, 둘 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 표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_____)		

2. 납부특례 적용대상 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행사이익	납부특례신청내용	
					원천징수 제외	분할납부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_____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신청서의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 납부특례 신청내용은 신청한 납부특례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4-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이연)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정의 및 요건

- ‘적격주식매수선택권’(qualified stock option)은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 i)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 ii)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 iii)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 iv)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부여 및 행사요건을 충족해야 함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4 제5항)
 - ①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것
 - i)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원 등과 약정할 것
 - ii) 벤처기업 임원 등과 약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iii)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②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제2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벤처기업 임원 등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를 과세하지 않음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비과세 되는 금액 제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음

$$\text{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이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함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과세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추후에 양도하는 시점으로 이연(移延)하는 효과(과세이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이하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로 하는 과세연도는 이하와 같음
(조특법 제16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4조의4 제8항)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되, 이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i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iii)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됨
- 과세특례 전용계좌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됨

과세특례 신청 절차

-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조특법 제16조의4제1항,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특법 제16조의4제2항,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

참고 18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란?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는 조특법 제16조의4제8항, 시행령 제14조의4 제1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함
 - i)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 ii)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 iii)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 iv)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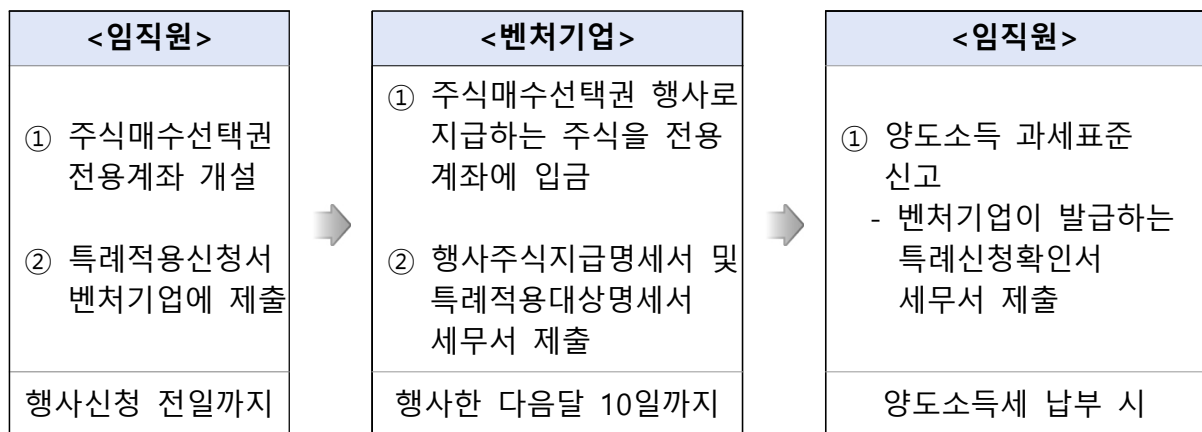
(조특법 제16조의4 제6항,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

참고 19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절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2. 12. 31.>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 청 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 소재지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자 회 사 임 직 원 여 부		[]	
자회사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	⑥과세특례 적용(④-⑤)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 여부			적격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10% 초과자와 특수관계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한 수량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1주당 시가와 1주당 행사가액의 차이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계좌 내 용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개설변경 내 용		당초	변경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변경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계좌를 근거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백상지 80g/㎡]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_____)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자회사 임직원 여부		
					해당여부	자회사 법인명	자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3.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제출 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X 분기

2.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명세

일련 번호	전용계좌 보유자			벤처기업 주식 변동내역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계좌번호	⑪ 벤처 기업명	⑬ 분기 초	증가	감소				⑰ 분기 말	
	⑥ 주민 등록번호	⑧ 거주지 국	⑨ 거주지 국 코드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⑭ 입고	⑮ 이체	⑯ 인출	⑰ 양도	⑱ 기타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Q & A



I.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와 분류

Q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어떤 법을 근거로 부여하여야 하나요?

비상장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근거 규정은 벤처기업법 및 상법입니다.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때, 벤처기업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II.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Q2

벤처기업법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므로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벤처기업,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벤처의 경우에는 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Q3

벤처기업법에 속한 사회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리고 계약직 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법은 '임원'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도 명백하게 '임원'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상법 제312조와 같이 임원의 범위에 이사와 감사가 속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규정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사외이사도 이사이므로 임원에 포함됩니다.

집행임원은 상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이사 중에 선정)를 갈음하는 기관으로 집행임원도 임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법은 직원의 유형에 관하여 근로형태를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4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중 누구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벤처기업법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Q5

벤처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주식매수선택권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Q6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최소 근무년수 2년을 초과하거나 단축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은 최소 기간을 의미하므로 정관의 규정 및 사인 간 계약을 통해 2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에서 정한 **최소 재직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불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Q7

이미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에게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와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미 부여받은 자에게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면 가능합니다.**

Q8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나 주가의 큰 변동이 있는 경우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의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회사와 보유자 간의 계약인 만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계약의 **일부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9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 가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임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주발행**으로 주어야 합니다. 자기주식이나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셋째, **권면액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이번에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아래 계산식의 누적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Q10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예전에 부여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이 있는데 처벌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또는 철회한 벤처기업은 중소벤처24(www.smes.go.kr)를 통해 부여,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기업의 신고 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신고자료는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 및 **비과세 등 조세특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 중이라면 부여하거나 취소·철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건이 있다면 **늦더라도 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Q11

저희 회사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잔여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행주식총수는 회사의 자본금을 권면액으로 나눈 주식 수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였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발행된 주식의 총수에 해당 비율을 곱한 것이 부여한도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정관상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000만주, 부여 시점에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600만주,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비율이 20%라면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1,000만주의 20%가 아니라 **600만주의 20%인 120만주**가 됩니다.

부여한도를 계산하였다면 잔여한도는 부여한도에서 아직 행사·취소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를 빼면 됩니다. 잔여한도가 0주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취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사 또는 취소분만큼 잔여한도가 복구됩니다.

III.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Q12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지만 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구제수단을 활용해야 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라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등이 부여되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행사자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게 되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 따라 행사자에게 주식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회사가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지 못한 차액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1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2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은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불가**합니다.

다만, 벤처기업법은 2년 이내에 퇴직하더라도 “사망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정년 제외)”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기존의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원은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명시된 행사기간(시기~종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사기간**”만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여 일로부터 2년 이내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불가하고,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업은 그 사유를 들어 퇴직한 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Q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었지만,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이 경우도 벤처기업법상의 특례가 적용되나요?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24조에 따라 벤처기업이었던 회사가 벤처기업 당시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이 아니게 되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와 반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타 문의

Q15

매뉴얼이나 Q&A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벤처기업법 및 하위법령 해석**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벤처기업 소재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세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벤처기업 소재지의 세무서에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 전체적인 질의가 아닌 **기업의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 또는 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0 10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삭 제>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3. 시행규칙

제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
6.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
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8.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9.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③ 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2.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text{주당 가액} = 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div 3\text{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text{주당 가액} = \text{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div \text{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3. 법인세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부터 19. 까지 <생략>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소득세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이하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부터 18.까지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삭제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3.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 ②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6. 상법 관련 규정

1. 법률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2.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법 제54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② 법 제5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제1항의 관계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542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 수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 수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 수

⑤ 법 제54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예시) 및 해설



계약서 본문	해설
<p style="text-align: center;">[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p> <p>①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하 “부여대상자”라 한다)은 ②○○○○년 ○○○월 ○○○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회사의 부여대상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p>	<p>① 계약서의 시작 부분에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p>
<p>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설립·경영·성장·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하여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부여대상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규정하기 위해 작성한다.</p>	<p>① '23년 7월부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향후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면 근거 법률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제2조(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대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아래와 같다.</p> <p>1. 발행회사 : 주식회사 ○○○○(“회사”)</p> <p>2. 주식의 종류 : ①기명식 보통주식</p> <p>3.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수 : ②○○○○개</p>	<p>① 기명식 보통주식이 아니라 다른 종류주식(ex.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수권주식이 충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p>
<p>제3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회사는 정관 ○○○조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법으로 부여대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①다만, 회사는 행사 시점의 사정에 따라 정관 ○○○조에 따른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① 신주발행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나, 수권주식 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부여방법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p>

계약서 본문	해설
<p>제4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 계약서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은 ①○○○○년 ○○○월 ○○○일로 한다.</p>	<p>① 부여일은 통상 계약 체결일이며, 행사가격 조정 등에 영향을 주므로 주주총회 결의 이후 지체없이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p>
<p>제5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부여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1주당 ○○○○원으로 한다. ①다만,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을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로 한다.</p>	<p>① 부여 당시에 알지 못했던 거래가액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시가차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단서 조항이 필요합니다.</p>
<p>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① 제4조에 따른 부여일 이후 부여대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아래의 산식에 기초하여 ②제2조 제3호의 수량 및 제5조의 행사가격을 조정하고 그 ③내용을 부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1주 미만의 주식과 1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p>	<p>① 각 호의 사유 외에도 회사 및 부여대상자의 필요에 따라(ex.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주식배당 등)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p> <p>② 수량 및 행사가격의 조정은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부여대상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이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p> <p>③ 사유 발생 시 회사의 일방적 계산 및 통지에 따르지 않고, 부여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p>

계약서 본문	해설
<p>1.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1) \text{조정 후 행사가격} = \text{조정 전 행사가격} \times \frac{\text{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총수}}{\text{무상증자 직후 발행주식총수}}$ $2) \text{조정 후 수량} = \text{조정 전 수량} \times \frac{\text{무상증자 직후 발행주식총수}}{\text{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총수}}$ </div>	<p>③ 무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배정되기 때문에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부여 당시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p>
<p>2. 주식분할(액면분할) 또는 주식병합(액면병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1) \text{조정 후 행사가격} = \text{조정 전 행사가격} \times \frac{\text{분할 또는 병합 후 액면가}}{\text{분할 또는 병합 전 액면가}}$ $2) \text{조정 후 수량} = \text{조정 전 수량} \times \frac{\text{분할 또는 병합 전 액면가}}{\text{분할 또는 병합 후 액면가}}$ </div>	<p>④ 주식분할·병합 시 주식 1주당 회사에 갖는 권리가 달라지므로 주식 수의 증감 비율에 맞춰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p>
<p>3.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 감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1) \text{조정 후 행사가격} = \text{조정 전 행사가격} \times \frac{\text{기존 발행주식 수} - \frac{\text{감소 주식 수} \times \text{1주당 환급가액}}{\text{시가}}}{\text{기존 발행주식 수} - \text{감소주식 수}}$ $2) \text{조정 후 수량} = \text{조정 전 수량} \times \frac{\text{기존 발행주식 수} - \text{감소 주식 수}}{\text{기존 발행주식 수}}$ </div>	<p>⑤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 상환을 진행할 경우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므로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부여대상자가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p>
<p>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산식으로 조정된 행사가격이 시가 또는 액면가에 미달하거나 조정된 수량이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등 벤처기업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p>	<p>⑥ 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향후 분쟁의 위험이 있으므로</p>

계약서 본문	해설
<p>부여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⑥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p> <p>제7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① 부여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① 재직기간에는 휴직 기간을 포함한다. ② 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② 행사기간은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은 상실된다.</p>	<p>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p> <p>① 어떤 휴직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행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p>
<p>제8조(주식매수선택권 양도 등의 제한) 부여대상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여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p>	
<p>제9조(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 분할계획 및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승계된다. 이 경우 회사는 행사가격 및 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p> <p>①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계약에 의해 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부여대상자는 합병결의가 있은 후 〇〇일 내에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합병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합병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회사가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분할합병하고, 부여대상자에 대한 고용 또는 소속관계가 그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존속회사에 승계되는</p>	

계약서 본문	해설
<p>경우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하여 그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부여대상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결의가 있는 후 〇〇일 내에 행사기간이 도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할 것을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호한 계약 내용은 향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p> <p>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무 및 인사 정책에 따라 취소사유를 규정하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제10조(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부여대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여대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부여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 또는 감사인 부여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채삼자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부여대상자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411조(겸임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5조(해임)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부여대상자의 해임을 권고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부여대상자(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 본문	해설
<p>6. 부여대상자(종업원인 경우에 한한다)가 회사의 인사규정 제○○조, 제○○조에 위반하여 징계 또는 상벌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경엄 또는 결직을 한 경우</p> <p>7. 부여대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p> <p>8. 부여대상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압류된 경우</p> <p>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한 경우</p> <p>10. 그 외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② 제1항의 사유의 전부 또는 이사회의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되고 이 소송에서 부여대상자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한 이사회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p> <p>③ 상법 제385조(해임)에 의해 부여대상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거나, 부여대상자를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부여대상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소에서 부여대상자를 해임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며, 부여대상자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무효, 부존재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부여대상자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만큼 행사기간을 연장한다.</p>	<p>① 행사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지나치게 잦은 행사로 인해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p>
<p>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절차) ① 부여대상자는 제7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수량 또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부여대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①행사 횟수는 회사의 각 영업연도 당 ○회 이내로 제한한다.</p>	<p>① 행사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지나치게 잦은 행사로 인해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p>

계약서 본문	해설
<p>② 부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이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신청서가 회사에 도달한 날 부여대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p> <p>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이행방법, 일정, 납입기일 및 장소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행절차를 부여대상자에게 통보한다.</p> <p>⑤ 부여대상자는 제4항에 의해 통보된 절차에 따라 주식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부여대상자에게 행사 수량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보상 방식으로 부여된 경우 행사일 기준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차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한다.</p>	<p>범위 내에서 연도별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②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미리 이행방법, 일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효력) 부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라 주금을 납입한 날(자기주식 교부방법의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 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부터 회사의 주주가 된다. 다만,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13조(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제14조(준용규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 회사의 정관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p>	

계약서 본문	해설
<p>제15조(재판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양 당사자 사이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 사무소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p> <p>제16조(서명날인 및 보관)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부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회 사) 법 인 명 : 주 인 소 : 법 등 호 : 대 록 자 : 표 : : (부여대상자) 성 주 명 : 주 인 소 : 등 : 록 : 번 : 번 : 호 : :</p>	